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경위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01년 7월 5일 목포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01년 7월 10일

다. 상정일자 : 2001년 7월 19일

2. 제안설명요지

가. 제안설명

o 본회의(제1차): 정 은 면 총무국장

o 총무사회위원회: 정 봉 기 회계과장

나. 제안이유

o 2000. 10. 20.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공포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조례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다. 주요내용

- o 공공시설의 위탁관리(안 제5조)
- o 목포시공유재산심의위원회(안 제7조)
- o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·사용료적용확대(안 제23조)
- o 주거용 사유건물 점유토지 대부료 산출방법(안 제25조)
- o 전세금 납부방법에 의한 대부기준(안 제25조의2)
- o 대부료 연체 요율 감면(안 제28조)
- o 변상금 부과에 앞선 청문제도 도입(안 제28조의2)

3. 질의 및 답변요지

"생 략"

4. 위원회 활동

- o 제104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7. 19.)
 -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청취 및 질의·응답

- o 제106차 총무사회위원회 회의(2001. 7. 24.)
 - 안건검토 및 심사의결

5. 토론요지

- o 목포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. 10. 20. 지방재정법의 개정공고에 따라서 개정법률에 맞도록 개정하는 안으로서 전라남도에서 도내의 각 시·군에 전남도회계 13330-967(2001. 4. 6) 호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준안을 시달하여 개정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문제점이나 하자는 없으며
- o 대부료, 연체요율 감면 등은 공공시설물의 대부자에게 수익을 주는 등 규제 일변도인 조례를 개정하는 등 주민편익위주의 행정조치이므로 원안대로 가결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「원안가결」하였음.

6. 심사결과

【원 안 가 결】